



보도 일시	2022. 1. 6.(목) 15:00	배포 일시	2022. 1. 4.(화) 13:00
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

담당 부서	세제실 조세정책과	책임자	과장 변광욱 (044-215-4110)
		담당자	서기관 최시영 (csy4325@korea.kr)

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

- 기획재정부는 '21.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.
- 동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('22.1.7.~1.20.), 차관회의·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'22.2월 중 공포·시행될 예정입니다.
-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【첨부】 1.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요약본
2.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상세본

※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(044-215-내선번호)

- 국세기본법, 국세징수법(4151~4), 소득세제(4211~3, 4215~4218), 법인세제, 과세자료제출(4221~2, 4226), 조세특례(4131~3, 4136), 금융세제, 증권거래세, 농어촌특별세(4231, 4233, 4236), 상속증여세, 양도소득세, 종합부동산세(4311~4, 4316~8), 부가가치세,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특례, 외국인관광객 등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(4321~3, 4326), 국제조세(4241~3, 4246), 개별소비세·주세·주류면허·교통에너지환경세(4331, 4333, 4336), 관세, 관세사(4411~3, 4416~7), 자유무역협정 이행 특례(4471~4)